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3일 20시 27분



목차

목차	2
여수한뉴스 - 전체	3
여수시,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	3

여수시,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

2021.11.15 조회수 617 담당부서 기후생태과 담당자 박송희 연락처 061-659-3811
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시행
위반 시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 부과(3회까지 경고)

여수시는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단속을 실시한다.

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7개 지점 9개소에서 이루어지며, 위반 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(1일 1회)을 부과한다.

다만 긴급자동차,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차량,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, 영업용 차량,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,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.

5등급 차량은 '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(emissiongrade.mecar.or.kr)'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다.

'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전국에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, 수도권 및 6개 특별·광역시*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.

* 6개 특·광역시 :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

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해당지역마다 다르므로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제한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.

시 관계자는 “대기환경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”며 “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3. 여수시,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.jpg (376 hit/ 462.9 KB)

[미리보기](#)

목록

이전글

여수시,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목욕장업 전..

다음글

여수시, 전 공직자 참여 '자원순환 실천 운동' 붐물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Yeosu Web Contents

